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구체적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주택국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과 주택국 소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유잡종재산인 토지 11,078.5m²는 1970년도에 우리 시가 건립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시범아파트 및 중산층아파트 단지 내 시유재산으로서 현 건물소유자들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현 건물 소유자에게 동일지구 아파트 입주자 공동지분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계상재산

○ 처분 2건 : 토지 16필지 11,078.5m²
(3,351.2평)

시유재산 관리계획
('97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국민주택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2	11,078.5	15,842,255				2	11,078.5	15,842,255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2	11,078.5	15,842,255				2	11,078.5	15,842,255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 매각대상 재산목록 수록생략)